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510호
----------	--------

2020. 10. 21.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9. 28. 양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10. 07. 복지건설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 10. 21.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5년  
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  
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5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 조문이 마련되어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치를 연장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지점이 없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997년 12월 5일 "여성발전기금"이란 명칭으로 설치됨. 이후, 2016년 3월 7일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었음.
- 2020년 9월 기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6억 3,563만 5,865 원이며,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1】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원)

연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d) (d=a+b-c)	비고
		이자수입(b)	사업비(c)		
2016	1,861,194,246	749,314,670	38,155,500	2,572,353,416	이자수입에 출연금 7억원 포함
2017	2,572,353,416	45,731,691	25,482,000	2,592,603,107	
2018	2,592,603,107	79,955,197	42,192,268	2,630,366,036	
2019	2,630,366,036	53,941,552	41,656,280	2,642,651,308	
2020.9	2,642,651,308	38,481,557	45,497,000	2,635,635,865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칙에 정의했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칙에 조문을 신설하여 삽입하고자 함. 이는 법제처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부칙규정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①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②준비행위, ③적용례, ④특례, ⑤경과조치, ⑥기존 조례·규칙의 폐지, 그리고 본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⑦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⑧개정된 본칙과 다른 조례·규칙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함.
- 이를 종합하면, 부칙은 본칙과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을 모아두는 것임.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 문제가 없음.

**【표 2】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4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